

청주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가단64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준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2. 6. 9.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4.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와 2018년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충남 태안군 E 임야를 매수하여 개발하기로 하고, 피고 B에게 2017. 12. 27. 부동산개발사업 및 법인 설립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B이 2017. 12. 29.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고, 법인 설립 비용 등으로 2,200만 원만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남은 4,8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0. 7. 6. 피고 C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2018. 2. 5. E 임야 매수대금으로 3,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매매수수료 및 등기비용으로 600만 원, 기타 경비로 4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8. 4. 2. 원고에게 1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 C의 계좌로 입금받은 1,000만 원은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D 양도와 관련한 이익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7. 12. 27. 피고 B에게 법인 설립 비용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B이 2017. 12. 29.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고, 법인 설립 비용 등으로 2,2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을가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남은 잔액 4,800만 원(= 1억 원 - 3,000만 원 - 2,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2. 4.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매수대금 3,700만 원 부분

갑 제4호증, 을가 제1호증의 3,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8. 2. 5. 충남 태안군 E 임야의 소유자인 F에게 1,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F가 2018. 2. 5. 피고 B에게 ‘1,900만 원. 부동산의 표시: 충청남도 태안군 E. 상기 금액을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금으로 정히 영수하고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발행인: F’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거 및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E 임야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D가 2018. 2. 14. 소유자인 F로부터 매매대금 1억 8,900만 원에 이를 매수하여 2018. 2. 20.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회사는 F에게 2018. 2. 14. 8,900만 원, 2018. 2. 20. 1억 원 합계 1억 8,9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은 F와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F에게 계좌로 1,800만 원, 현금으로 1,9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매매대금 중 3,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다운계약서’ 작성에 관한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② F가 작성한 영수증(을가 제2호증)은 1,900만 원의 현금 영수증이 아닌 매매계약금 1,9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이므로 피고 B은 F에게 계좌로 송금한 1,800만 원을 포함한 총 1,900만 원을 매매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③ 피고 B은 2018. 2. 14. F로부터 1,9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2022. 5. 30.자 피고 B 제출 답변서 첨부내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 및 사실만으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8. 4. 2. 100만 원 반환 부분

갑 제2호증의 1, 을가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이 2018. 4. 2. 100만 원을 계좌이체한 원고의 신탁계좌는 2018. 3. 28.경부터 G동 주민자치 위원회 통장으로 사용된 점, 피고 B의 신탁계좌에서는 생활비 등이 지출되기도 하는 등 피고 B이 위 계좌에서 경비 명목의 돈만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가 제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법인 설립 비용으로 받은 돈의 반환 또는 변제 명목으로 위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매매수수료 및 등기비용 600만 원, 기타 경비 400만 원 부분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2020. 7. 6.자 1,000만 원 송금내역 비고란에 'B병원차용'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민